

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포상 규정

(제정) 2021.02.15. 규정 제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임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평창군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임원 및 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의 포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포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직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사람
2.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개선 창안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사람
3.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
4. 그 밖에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1. 공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
2. 직위해제 및 견책(불문경고 포함)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3. 감봉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4. 강등·정직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5.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
6. 감사·조사·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
7.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제4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부 및 평창군 등 관계 행정기관의 포상
2. 이사장의 포상

제5조(추천과 심의)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추천하며,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이사장에게 추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.

제6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제7조(직원의 포상) ① 포상의 요구는 각 부서의 장이 포상요구서[별지 제1호 서식]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포상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이중포상 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9조(포상방법 및 부상) 포상은 상금·상패·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,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0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[별지 제3호 서식]의 포

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부 칙 <규정 제3호, 2021. 2. 15.>

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공 적 조 서					
①성 명	한 글			②소 속	
	한 자				
③주 소				④직 위	⑤사 번
⑥본 적				⑦생년월일	⑧병 과
⑨직위및직급		⑩근무기간		⑪수공기간	⑫수공장소
⑬추천훈격		⑭추천서열		⑮사정훈격	
주 요 경 력					
⑯년 월 일	⑰이 력	⑱년 월 일	⑲이 력		
과거 포상기록 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					
⑳년 월 일	㉑내 용	㉒년 월 일	㉓이 력		
조 사 자					
㉔소 속					
㉕직 급		㉖직 책			
㉗성 명	(인)				
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.					
20 년 월 일					
추천자 직위		직	성명	(인)	

(뒷 면)

공 적 사 항

[별지 제2호 서식]

공적심의회조서

훈격	추천 순위	소 속	직급 및 직 명	성 명	연령	학력	주요 경력	입사일자 수공기간	공적 (요지)	상벌	비고

